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특허청 법제업무 운영규정

◇ 제·개정 이유

특허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, 타부처 관련 규정 개정과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현행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법제업무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「특허청 법제업무 운영규정」을 일부 개정함

◇ 주요내용

- 가. 정부입법 추진시 절차의 원활화를 위해 산업부 장관 승인 시기를 조정하고, 입법예고시 특허청 자체 공고번호를 사용토록 하여 적시 입법을 지원함(안 제15조, 제21조)
- 나. 법령안 주관부서의 업무부담 경감과 절차 효율화를 위해 필요시 청내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함(안 제11조제3항)
- 다. 관보 게재 절차 등 타부처의 규정과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규정을 현행화함(안 제15조제2항, 제21조, 제31조)
- 라. “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운영규정” 등 청내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심의 절차 준용 등을 통해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함(안 제10조, 제18조)